

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-287호

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
공람 · 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1983-317호(1983.9.3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984-234호(1984.4.27.)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192호(1993.6.23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1-36호(2001.5.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4-51호(2004.8.5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7-36호(2017.3.1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7-132호(2017.9.29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.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구(도시개발과)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9년 3월 15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1) 정비구역의 위치 : 종로구 신문로2가 106-5 외 62필지

2) 정비구역의 면적 : 7,052.4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덕수궁피에프브이(주) 대표 LAW CHUEN LAM EDWARD

2)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, 케이티앤지타워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1993.6.23.~2019.5.30.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1993.6.23.

바. 변경사유

1)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

사. 주요 변경내용

기 정	변 경	비 고
1993.6.23. ~ 2019.5.30.	1993.6.23. ~ 2022.5.30.	3년 연장

아. 공람기간 : 2019.3.15.~ 2019.3.29.

자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72)